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단558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선병욱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양성은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서울 중구 E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수인 지위에 관하여 2019. 8. 6. 이루어진 매수인 지위의 증여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6,469,178원, 원고 B에게 24,746,9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는 D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16억 4,000만 원에 대한 증여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2019. 8. 6. F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으로부터 16억 4,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를 증여받은 것을 취소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선행하여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5. 23. F로부터 서울 중구 E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 2002. 8. 23. 중도금 13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잔금 13억 3,000만 원을 2002. 9. 2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D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D은 피고와 사이에 2002. 9. 24.부터 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 잔금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F는 2012. 3. 6.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316호로 위 매매잔대금과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F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A은 2017. 4. 11. D과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1352(2016나76635) 사건에서, D이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17. 9. 30.까지 2,3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 B은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67822 사건에서, D이 원고 B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B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87887 사건에서, D이 원고 B에게 2017. 9. 3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8. 6. F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8억 4,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억 원, 중도금을 13억 4,000만 원, 잔금을 22억 원으로 정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6억 4,000만 원은 D이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F는 D으로부터 위 잔금 22억 원을 지급받고, 2019.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원고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확정된 조정조서,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D의 채권자라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6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위 매수인 지위 이외에 D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 확정된 조정조서,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과 F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29억 7,000만 원에서 F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31호로 D에게 승소한 판결금 중 일부를 더하여 38억4,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4,000만 원은 D이 F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4,000만 원의 지급으로 같음한 사실, ③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나 실제로는 D이 피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2억 원도 실제로는 D이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D의 배우자 H가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D이 F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6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위 증여행위에 따라 D은 적극재산을 상실하고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D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D이 직접 체결하거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D의 배우자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와 같은 매수인 지위의 이전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위 증여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F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은 F의 D에 대한 제1의 다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F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4,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는 D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4,000만 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는 잔금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D의 피고에 대한 위 매수인 지위의 증여가 취소되는 이상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매수인 지위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그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매수인 지위를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D이 증여한 매수인 지위의 가액은 16억 4,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6.까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액은, 원고 A의 경우 40,694,246원[= 2,300만 원 + {2,300만 원 × (5 + 47/365)년1} × 15%], 원고 B의 경우 9,617,540원[= 400만 원 + {400만 원 × (9 + 362/366)2} 년 × 5%] + {400만 원 × (6 + 12/365)3} × 15%]]과 17,693,150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5 + 47/365)4} × 15%]]의 합계 27,310,690원(= 9,617,540원 + 17,693,150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이 D이 증여한 매수인 지위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매수인 지위의 증여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36,469,178원, 원고 B에 대하여는 24,746,9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6,469,178원, 원고 B에게 24,746,9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1) 2017. 10. 1.부터 2022. 11. 16.까지

2) 2006. 11. 9.부터 2016. 11. 4.까지

3) 2016. 11. 5.부터 2022. 11. 16.까지

4) 2017. 10. 1.부터 2022. 11. 16.까지